

# 환 · 경 · 관 · 련 · 질 · 의 · 응 · 답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당사에 기존 Glyoxal(옥살알데히드, 구조식:  $O=CH \cdot CH=O$ ) Tank를  $10m^3 \rightarrow 110m^3$  변경하고자 합니다.

Glyoxal은 알데히드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규칙 별표3의 14호. 공통시설 바. 용적  $50m^3$  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중이라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50m^3$ 미만이어서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다,  $110m^3$ 로 증설시 용적이  $50m^3$ 이상이 되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19조 3항 1호에 의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9호에 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정의를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였습니다.

위의 정의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분류 중 당사에 설치하고자하는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결과 그와 일치하는 오염물질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사는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악취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 중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악취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성상변화



현재 소각로업에(일50톤 미만)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100%로 소각을 하고 있으나 동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성상을 변경할 경우 설치변경신고 수리후 사용개시 전까지 변경되는 소각대상물로 소각 가능여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완료 및 사용개시신고 수리후 변경되는 소각대상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혼합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플라스틱 원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생산 공정 중 원료인 PE와 안료(수지안정제)를 혼합하는 시설이 총 16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7.5HPX11대, 15HPX5대).

먼저 원료로 쓰이는 PE나 안료(수지안정제)는 5mm정도의 크기로 고체의 과립상태입니다. 혼합시설의 형태는 개구부(투입구)에 수동으로 원료를 투입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하고 원료투입구나 배출구는 덮개가 있어서 혼합 중에는 닫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혼합시설은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중 용적  $3m^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발생하는 오염물질

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콘크리트 부식과의 연관성

**Q** 당사 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의 종류는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CO, CO<sub>2</sub>, 바나듐, 황입니다.

이들 성분중 Sox(황산화물)는 대기 중의 수분(H<sub>2</sub>O)와 결합시 H<sub>2</sub>SO<sub>4</sub>라는 액상 황산이 미세하게 형성되어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이로인해 콘크리트의 석회성분인 CaCO<sub>3</sub> 및 액상화된 황산(H<sub>2</sub>SO<sub>4</sub>)와 결합해 알칼리성인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되어 콘크리트가 들고 일어납니다. 백색의 판별이 누렇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D<sub>2</sub>가스라는 것도 방출되는데 유리까지 허열게 녹여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콘크리트까지 부식시킬 정도면 주변의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 관련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할까요?

**A** 오염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귀하 사업장내의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우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누출 또는 유출 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사업장내에 설치·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실적보고 관련

**Q**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지고 있으나 소각이 아닌 정제로서 재활용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폐기물실적보고시에 재활용실적보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처리실적보고도 해야 하는지요? 나)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가요?

**A**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중 하나만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 해당 여부

**Q** 당사는 대기배출시설 가동 신고를 한 도장시설(3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장시설의 용량은 18m<sup>3</sup>×3기, 공정도는 제품투입 → 도장 → 건조 → 검사 → 출하입니다. 이번에 생산제품을 도장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실제 가동(양품) 조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장부스만 설치된 도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도장시설의 설치장소는 도장공정 내, 도장부스용량은 6.3 m<sup>3</sup>(건조로 제외), 공정도는 제품투입 → 도장 → 폐기(지정폐기물인 페페인트 고상으로 처리)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도장시설은 직접 제품출하에 관여하지 않고 생산현장에 투입하기 전의 제품을 sampling하여 생산조건을 맞추는 목적으로 설치될 시설입니다. 이후 제품은 다시 생산현장으로 투입되

지 않고 바로 폐기물로 폐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도장시설은 연구목적으로 보아 배출시설 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순수 연구용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 받은 도장공정과는 별개의 시설로서 제품 제조 또는 처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필요에 따라 연구용 시설을 제품 도장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무기성오니 재활용 처리 기간

**Q**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5 규정에 의하면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 데, 무기성오니를 처리하는 기간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 무기성오니에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한 것까지인지?
- 무기성오니에 토사류를 50%이상 혼합한 성토재 등이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현장의 성토, 복토재로 사용하는 것까지인지?

**A** 무기성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인허가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어야 재활용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재활용신고자는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오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Q** 기존 오분법에 의해 만들어진 오수처리장이 향후 오분법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또 2007년 9월 27일까지는 유효한 오분법을 적용하여 새로이 짓게 되는 오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완공일이 2008년을 넘기게 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시 폐내화물의 명칭

**Q** 2007년도 배출자실적보고의 방식에 의하여 실적보고를 하고자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폐기물 명칭을 폐내화물로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실적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폐내화물이라는 폐기물명칭이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폐내화물로 신고하여 필증을 받은 경우 배출자실적보고에는 어떤 명칭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14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외의 것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내화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폐기물에 관하여



당사는 폐유를 저온 열분해 하여 80% 이상의 고급 중질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하였고 이제는 연구가 다 완료되어 시장에 적용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 시장에 적용하기 전 최종적인 확인을 위하여 실제 플랜트 1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는 아직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주고도 폐유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최종실험용 플랜트를 실험 가동 하기위에서는 실제 가동처럼 하루에 약 5톤에 폐유가 3~4개월 동안 필요 하는데 이런 경우 연구하고 실험시 필요 하는 폐유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폐유는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조달하시기 바라며, 관할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8호 서식) 및 처리증명 변경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 단독정화조 폐쇄대상여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으로 현재 모든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가 와서 군에다 하수처리장으로 모두 유입되는데 왜 단독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냐고 했더니 군에서는 건물사정상 전단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서 1차적으로 단독정화조를 거쳐 하수관으로 유입되므로 청소를 하여야 하며 폐쇄시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분류식하수지역은 단독정화조 폐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왜 폐쇄가 안 되는지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며, 합류식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건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세식화장실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식 구역 내에서 단독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시설의 이중투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유입농도의 저하), 단독정화조의 사후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바, 분류식 구역 내의 단독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비점오염원변경신고 대상



비점오염원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2항의2에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비점오염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문구에서 “신고면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 인허가 또는 신고에 신고된 면적을 의미하는지요? 특히 기존공장의 경우 1) 현재의 사업장경계(사업장부지)를 15% 이상 확장하는 경우 인지 2) 현재의 사업장경계(사업장부지)내, 추후 확장을 위하여 남겨놓은 공지에 공장시설물 설치지역이 15% 이상 확장되는 경우인지 정확한 의미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한 비점오염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 중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당초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상 신고된 총 부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장 경계가 늘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코너에서 발췌한 내용임]